

#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7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경우, 경만선, 권수정,  
권영희, 김경영, 김용석,  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  
서윤기, 신정호, 양민규,  
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  
이준형, 이호대, 임종국,  
장인홍, 조상호, 채유미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대상을 명시하여, 학생,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등 구체적으로 교육의 대상을 제시함.
- 또한 노인, 소아, 임산부, 간질환자,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하고 시장이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서울시민의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에 사업 대상을 명시함(안 제5조제1호 각 목 신설).
- 나. 노인, 소아, 임산부, 간질환자,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가함(안 제5조제8호).
- 다.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(안 제7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약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 
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 
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

나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  
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

다.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  
용 교육

라.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  
품 안전사용 교육

마.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
에 대한 교육

8. 노인, 소아, 임산부, 간질환자,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 
제공 사업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 
다.

제7조(홍보) 시장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  
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조(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)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</p> <p>나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</p> <p>다.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</p> <p>라.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</p> <p>마.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</p>

<p>2. ~ 7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8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제7조·제8조</u> (생략)</p>	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노인, 소아, 임산부, 간질환자,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</u> <u>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<u>제7조(홍보) 시장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</u> <u>홍보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8조·제9조</u>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</p>
---	---

문서번호

2021101400000018

## 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경우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원상 팀장  
이혜린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10.14

회신일 : 직접입력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###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- ※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호제1호,제8호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,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해당사업을 서울시에서 기추진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
- 서울시 서북병원 기추진 사업 2021년 예산 7,250천원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○ 예상되는 비용은 5년동안 150,000천원으로 연평균 30,000천원임

○ 추계의 전제

-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비는 서울시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
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≍ 150,000천원

- 총 비용 =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비

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제7조 (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비)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50,000
	소계 (b)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50,000
총비용 (b-a)	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50,000

○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비용 ≙ 150,000천원  
= 30,000천원 × 5년

※참고) 2021년 시민건강국 건강돌봄 대시민 홍보비 30,000천원  
2021년 시민건강국 음주폐해 예방 대시민 홍보비 30,000천원

#### 참고) 서울시 기추진 사업

##### □ 사업 목적

- 건강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약사용에 대한 교육을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사용 관련 정보 선별 및 약물사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서비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

##### □ 사업 내용

- 연령별 선호 콘텐츠 확대를 통한 비대면 교육 강화
  - 오디오 콘텐츠 팟캐스트(팟빵) 운영
  - 동영상 콘텐츠 유튜브 신설
  - 오디오·동영상 콘텐츠 활용 확대
- 건강취약계층 대상 정보교류 강화
  - 다제 약물 사용 고연령군 교육
  - 약물 자가 관리가 필요한 결핵 노숙인 교육

□ 2021년도 예산 : 7,250천원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분석관(주무관) 이해린

☎ 02-2180-7955

e-mail : lovelyynn91@seoul.go.kr